

건축물 미술품 관리를 위한 시도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2019. 4. 23.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공공미술팀
2019. 5. 28.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품 정기조사 실시

경상남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두 달간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품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5%)에 해당하는 미술품품을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1점당 평균 8,000만원의 가격에 설치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도내 설치된 1,200여 점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사후관리 및 보존 상태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미술품품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은 물론 도민 보행안전과 정서순화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요량이다.

경기도,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28일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품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품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제도는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예술작품 감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되어 1995년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작품선정과 설치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일부 화량이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특정작가 편중, 작가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투명한 심의, 품질관리 강화, 작품성 향상 등 건축물 미술품품 선정에 공정한 경기도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선(안)
공모제 도입	· 건축주 자율선택	· 공동주택, 도·산하기관 건축물 의무 공모제 시행 · 건축주 요청 시 도 공모 대행 · 자체 공모 선정 시 심의 인센티브 부여
심사위원회 운영	· 심의내용, 위원명단 비공개 · 위원장 호선제, 85명 인력풀 운영 · 위촉기간 2년(연임 가능)	· 심의내용, 위원명단 공개 · 위원장 임명 · 위촉기간 1년(단임제) · 위원 제척·회피·기피 제도 강화
미술품품 검수단 운영	· 시·군 담당자 설치 확인	·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 현장 확인 · 하자발생 시정, 유지·관리 자문 응대, 개선사항 권고
작품의 사전 정보 제공	· 설치완료 후 관리 사이트 등록 · ※공공미술포털(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미지, 위치, 작가명, 규격 표기	· 심의 직후 미술품품 정보 제공 · ※이미지, 가격, 작가명, 재질, 규격, 사용계획서 등

자료: 경기도(2019), "도, 전국 최초 건축물 미술품품 설치 공모제 의무화 제도 마련", 5월 28일자 보도자료.